

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12월 7일
-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8일

3. 제안이유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위원회 기능(안 제2조)
 -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, 총괄, 조정 협의 등
- 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 - 위원장(도지사)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
- 위원의 임기(안 제4조)
 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
- 실무위원회(안 제7조)
 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

실무위원회를 둠

○ 조사·연구(안 제8조)

- 관계전문가, 기관, 단체 등에 조사·연구 의뢰
- 조사·연구에 필요한 경비 예산 범위내 지원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

○ 2004. 6. 1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(2004. 6. 18)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.

○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○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과 제7조 실무위원회 위원정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

○ 제3조(위원회의 구성)1항 2호의 “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소방본부장”을 “충청북도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본부장”으로

6호 “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”을 “충청북도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”으로

7호 “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”을 “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”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